

광주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5245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관

피 고 유한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출

변론 종결 2021. 4. 14.

판결 선고 2021. 5. 26.

주 문

1. 피고와 유한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0. 3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363,763원 및 그 중 21,807,479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인바,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37953호로 C를 상대로 2018. 2. 1.부터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3. 10. C는 원고에게 30,198,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3. 2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20. 4. 6.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8,390,950원을 수령하였다.

다. C는 2019. 10.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및 D 액티언 자동차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매매가격(원)	소유권이전등록일
1	E	SM5	11,000,000	2019. 10. 30.
2	F	그랜드카니발	8,300,000	2019. 10. 31.
3	G	SM5	10,800,000	2019. 10. 30.
4	H	K5	7,000,000	2019. 10. 30.
5	D	액티언스포츠 (픽업)	2,500,000	2019. 10. 30.
합계			39,600,000	

라. C는 2019년도 소득금액이 적자였고, 2020. 2.경부터 국세를 체납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북광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 이미 C는 경영 악화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는 C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며,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C의 사해의사도 넉넉히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된다.

2)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피고가 C의 채무부담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광주광역시 남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후인 2019. 11. 14.과 같은 해 12. 23.경 그 매매대금을 C의 사원 I의 처인 J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매매대금이 교부되기 전 소유권이전등록을 먼저 마치거나 유한회사 소유 자동차에 관한 매매대금을 사원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는 2020. 3. 30.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소외 K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 취급자 사원이 I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자동차에 관한 수리를 마친 후 그 수리비를 공제한

나머지매매대금을 2020. 12. 23.경 J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그 전인 2020.12. 21.경 소외 L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자동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송금받은 후 위 자동차에 관한 판매대금 중 일부를 I 측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I가 2019. 11.경부터 피고의 딜러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의 판매에 관여하기도 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금융 거래가 많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중고자동차업체의 딜러는 프리랜서로서 자기 돈 내지 업체로부터 빌린돈으로 자동차를 업체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판매한 후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로 근무하므로, 오히려 피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것이 실질적인 매매계약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위치한 전방자동차매매단지의 소유자가 C 등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해지 통보를 하였고, 이에 C가 다른 사업장소를 물색하다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등을 팔 수 밖에 없었다거나, C가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매물로 내놓기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이 반복되어 그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것이나,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자동차는 모두 제3자에게 판매되어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피고의 원상회복 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의 판매가 격보다 적다고 인정되는 원고의 채권액인 원금 21,807,479원(= 30,198,435원 - 체당금9,390,950원) 및 30,198,435원에 대한 2019. 9. 3.부터 체당금 수령일인 2020. 4. 6.까지의 이자 3,580,907원, 21,807,479원에 대한 2020. 4.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일인 2020. 12. 11.까지의 이자 2,975,377원을 합한 28,363,763원과 그중 21,807,479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